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3호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가. 엑스포 과학공원이 청산되고 컨벤션뷰로가 통합되어 『대전마케팅공사』 가 출범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
- 나. 그 동안 총괄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던 공유재 산관리계획을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엑스포 과학공원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2 호 가목).
-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대전마케팅공사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운영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42-600-5013, FAX 042-600-5019, E-mail : pjsj@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인재개발원, 엑스포 과학공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로 한다.
-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	
본부, 인재개발원, 엑스포 과학공원	<u>인재개발원</u>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산업건설위원회 : 경제산업국,	4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교통	
건설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	
본부, 농업기술센터,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 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대전광역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총괄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 ②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한다.
 -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 2.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처장
 -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 5.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과장
 -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 주관과장
 -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시유재산 : 지적과장
 -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④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보고된 시유재산중에서 총괄재산 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